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14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청구, 관련 처분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하여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영장·보전처분의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

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및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처분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요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사와”를 “사법경찰관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를 “검사에게”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를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을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로, “관계 서류를 검사”를 “해당 명령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

공소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를 “검사에게”로,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를 “다른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을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로, “관계 서류를 검사”를 “해당 명령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실황(實況)”을 “실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를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u>검사의</u>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 ----- ----- ----- ----- ----- ----- ----- ----- ----- - <u>사법경찰관</u> ----- ----- ----- ----- ----- -----.
②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	② ----- ----- ----- ----- ----- ----- ----- ----- ----- -----

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 당시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 또는 통보를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 또

사법경찰관-----

-----.

③ -----

----- 사법경찰관으-----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는 통보를 한다.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할 것을 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

----- 사법경찰관의 -----

-----.

----- 사

법경찰관과-----

-----.

1. (현행과 같음)

2. ----- 사법경찰관-----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
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
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
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
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
게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
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에게 -----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
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
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
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
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
에 따라 -----
----- 해당 명령
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
찰관-----.

③ -----
----- 지방공소청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
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
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
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

제53조(기소 전 추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
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
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
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
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
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추정보전명령
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
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

----- 지방공
소청-----

제53조(기소 전 추정보전명령)

① 사법경찰관은 -----

----- 검사
에게 -----
----- 따른 처분의 청구를 신
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
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
법원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
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
에 따라 -----
해당 명령에 관한 서류를 신청
한 사법경찰관-----
-----.

<삭 제>

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6조(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태(實況)을 조사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장에 따른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의 청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

<삭 제>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6조(검사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

----- 실
황-----

-----.

② 사법경찰관은 -----

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u>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 하여</u>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u>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u>	----- ----- <u>검사에게 압수·수 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 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 부한 영장에 따라 ---.</u> ③ <u>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 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u>
---	---